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4년 1년간 허용했던 냉장냉동차, 차량수송용 차량에 대한 타 유형으로의 대차 허용을 추가로 1년을 연장하고, 진개덤프의 대폐차 범위를 재활용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 외에 철스크랩운반용 차량까지 대폐차 범위를 확대하며, 최대 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 형평성을 맞춰 탄소배출저감 장치 등 조건 충족 시 16톤까지 한 번에 대폐차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폐차 규정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전

3) 규제심사 대상 사전검토 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0000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을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철스크랩운반용 차량”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을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철스크랩운반용 차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냉장냉동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을 일반형, 벤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3.5톤 이하까지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허용하며,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6톤 이하까지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허용한다.

1. 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SCR(선택적 촉매 환원)또는 DPF(디젤

2. 폐쇄형적재함을 설치한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3. 차령이 3년 이내인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4. 운송사업자가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벌칙(징역 또는 벌금),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2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포함)을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제14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로 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제5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행	개정안
제3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① 화물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말한다)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간에만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3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①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을 <u>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u> 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u>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u> 을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벤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5. ----- ----- <u>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철스크랩운반용 차량</u> ----- ----- <u>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철스크랩운반용 차량</u> -----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한다.	② ----- ----- -----.

1. ~ 3. (생 략) 4.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 한다)을 <u>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으로</u> 대차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 ----- -----<u>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철 스크랩운반용 차량</u>----- 5. 냉장냉동용 차량, 자동차수송 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을 일반형, 밴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 자동차로 대차		<u>작하거나 해당 기능이 추가된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u> 2. 폐쇄형적재함을 설치한 화물 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3. 차령이 3년 이내인 화물자동 차로 대차하는 경우 4. 운송사업자가 최근 5년간 화 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 하여 벌칙(징역 또는 벌금),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2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포함)을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③ ~ ④ (생 략) 제7조(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① (생 략) <신 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 3.5톤 이하까지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허용하며, 다 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조 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적 재량 16톤 이하까지 최대적재량 을 늘리는 대폐차를 허용한다. 1. 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SCR (선택적 촉매 환원)또는 DPF (디젤 미립자 필터)장치를 부	② ~ ③ (생 략) 제8조(대폐차의 주기) 규칙 제52 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화물자 동차의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 폐차의 경우 직전에 최대적재량 을 늘리는 대폐차를 한 날(신고 수리일을 말한다)로부터 16개월 (인증우수물류기업의 경우는 12 개월) 이내 대폐차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하인 경우에 는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대폐차의 주기) ----- ----- ----- ----- ----- ----- ----- ----- ----- ----- ----- 10톤 이하----- -----

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재검토기한) -----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 -----12월 31일----- ----- ----- -----.
---	--